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2. 21 선고 2022가합562898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1. 주식회사 A

2. B 주식회사

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[담당변호사 왕건]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[담당변호사 전수경]

변 론 종 결 2023. 10. 26.

판 결 선 고 2023. 12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,300,000,000원, 원고 B 주식회사에게 900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. 11. 13.부터 2022. 12. 5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원고들은 2022. 2. 25. 주식회사 D에게 합계 22억 원(원고 주식회사 A는 13억 원, 원고 B 주식회사는 9억 원)을 이자 연 8%, 변제기를 2022. 11. 13.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(이하 '이 사건 대여금 채무'라고 한다)를 연대보증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(피고는 원고들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, 제1회 변론기일에 이를 진술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).

2. 결론

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, 따라서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억 원, 원고 B 주식회사에게 9억 원 및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2. 11. 13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. 12. 5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의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¹⁾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찬우, 판사 안성민, 판사 박진옥

1) 변제기 당일인 2022. 11. 13.에는 이자를, 그 이후부터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.